

의안번호	2211064
의 퇴 인	백혜련 의원
회 답 일	2025.08.25.
추계번호	25C3410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0조의2 (사무기구 및 직원)	(제3항)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직원의 휴직에 관해서는 제 59조제1항제1호·제7호·제7호의2·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·제3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교원”은 “사무직원”으로 본다.	의무규정
2	안 제70조의8 (국가 등의 지원)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제70조의2제3항에 따른 휴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.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70조의2 (사무기구 및 직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70조의8 (국가 등의 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교원의 휴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휴직 범위, 기간 등을 확대하고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
 - 현행 「사립학교법」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함
 - －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남녀고용평등법”)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동법에 근거한 육아휴직이 보장됨

- 한편, 질병휴직에 관한 별도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, 「근로기준법」은 휴일,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표준취업규칙에는 질병휴직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

* [참고자료 1] 개정안 및 「남녀고용평등법」 육아휴직 규정 비교

* [참고자료 2] 휴직 관련 표준취업규칙 내용

□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휴직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추계가 곤란함

- 사립학교 직원 휴직에 수반되는 비용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부담하여야 하나,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
- 그러나, 개정안에 따라 휴직할 사무직원의 수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여부 및 그 구체사항 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 - 참고로,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가입대상이나 사립학교 교원과 달리 육아휴직 시 급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¹⁾

□ 이에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1) 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

제24조의6(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) 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「교육공무원 승진규정」 제11조제1항제1호나목, 「공무원보수규정」 제15조제6호 및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1조의3 등 국립·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.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현수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현수	02-6788-4627	jhs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 1] 개정안 및 「남녀고용평등법」 육아휴직 규정 비교

개정안 ¹⁾	「남녀고용평등법」
제59조(휴직의 사유)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,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 1. 신체·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(불임·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) 7.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의2.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(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)을 입양하는 경우 9.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, 배우자,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, 같은 항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.	제19조(육아휴직)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(이하 “육아휴직”이라 한다)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. 1.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모 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제1호의 부모 3.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모 또는 모

개정안 ¹⁾	「남녀고용평등법」
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,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,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. 다만,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.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.

주: 1) 안 제70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조항이 준용되며, 이때 “교원”은 “사무직원”으로 봄
 자료: 국가법령정보센터

[참고자료 2] 휴직 관련 표준취업규칙 내용

표준취업규칙	작성 시 착안사항
제17조(휴직사유 및 기간)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고려하여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휴직 외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. 1. 업무 외 질병, 부상, 장애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: ○년의 범위 내에서 요양에 필요한 기간 2. ~ 4. (생략) 4. 임신 중인 여성 사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)를 가진 사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(이하 이에 따른 휴직을 “육아휴직”이라 한다): 1년 이내(단,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.) -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-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5. ~ 6. (생략)	[필수, 선택] 근로자가 장기간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- 휴직 인정 사유와 휴직기간, 유급 또는 무급 여부 등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-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 등 법률상 부여의무가 있는 내용은 필수적으로 포함 필요 ☞ (참고) ‘25.2.23.부터는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(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참조)

자료: 고용노동부, 표준취업규칙 (2025.3.), 16p